

2006년도 제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의년월일 : 2006. 9. 8

제 의 자 : 의장 김 실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-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미리 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제1차 정례회의 회기 : 2006. 10. 17 ~ 10. 30 (14일간)
- 안건별 회기 운영계획(안)

| 구 분 | 소요일수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계 | 14 | |
| 개 회 식 | 1 | |
| 행정사무감사 | 7 | 공휴일 포함 |
| 조례안 등 안건심사(각 상임위원회) | 1 | |
| 군정질문 | 1 | |
| 결산검사 등 심사(예산결산 특위) | 1 | |
| 본회의 심의 의결 | 1 | |
| 공 휴 일 | 2 | |

3.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38조
-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